

기업회계에 대한 금융당국 동향 및 유의사항

“비상장법인(사업보고서 제출대상)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직접감리 실시” “회계부정 기업 감사(감사위원)에 대한 처벌 가능성 증대”

금융위원회는 2017. 1. 20.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안)'을 발표한 이후 국회에서의 공청회 등을 거쳐 2017. 4. 13.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의 회계감리는 엄격해지고 있으며, 외부감사 관련 법규의 개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과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I.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주요내용

1.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내부관리 강화

(i) 내부감사에 의한 감시의무 및 감사진행과정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ii) 회사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며, (iii)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을 상향하고, (iv)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을 허용하되 요건을 엄격하게 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내부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2.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 제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하는 사유를 확대하고, 외부감사인의 선택지정제 도입, 수주산업에 적용중인 핵심감사제 적용의 확대, 비감사용역 금지대상업무 확대, 적정감사투입시간의 규정을 통해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규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3. 감독당국의 감독강화

감독당국은 회계투명성을 위해 사전적인 감독으로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사후적 감독으로서 감리주기를 단축하기 위해 실무인력을 확충하고 감리권한을 강화하며,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법규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II. 최근의 감리동향

1. 감리지적률 증가

2016년 중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회사에 대한 지적률은 66.9%로 전년(51.9%) 대비 15.0%p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 강화되는 감리동향에 비추어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상반기 주요 감리결과

상반기 중 감리결과로 조치 받은 내용은 다양하나, 주요 지적 사유로는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자산(매도가능증권, 지분법투자주식, 토지 등) 등의 평가 관련 오류 등이 많았습니다. 한편, 회계오류가 있는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에 첨부하여 조치된 사례도 다수 있었으므로 계열사간의 거래 및 자산의 평가 및 추정에 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통한 회계처리에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III. 최근 개정되어 시행중인 외감법규 내용 및 유의사항

1.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감사인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직접 감리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감사인에 대한 감리를 금융감독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9조의 2, 제67조, 제75조, 제77조)을 개정하여 2016. 11. 17.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의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장법인에 준하는 수준의 감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회계투명성을 위해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감리결과 감사(감사위원회)에 대한 조치기준 마련

감사(감사위원회)가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상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고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분식회계 또는 중대한 회계오류가 발생할 경우 직무수행 소홀 정도 및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 조치가 가능하도록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제2호]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을 개정하여 2016. 7. 18.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에 감사(감사위원회)는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회사의 위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저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회사에 대한 분식회계 관련 과징금을 공시건별 합산 적용

다수의 기간동안 이루어진 수회의 분식회계에 대해 동일·동종의 원인행위로 판단될 경우 1건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종전 방식을 각 위반행위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정하여 2016. 7. 13.부터 시행중입니다. 회사의 분식회계에 다른 과징금이 대규모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IV. 법무법인 세종의 회계감리 전문대응팀 강화

법무법인 세종은 회계감독 분야의 변화하는 감리 환경과 보다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기존의 회계감리 전문대응팀을 확대 개편하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회계감리 전문 대응팀은 다양한 기업회계사건 관련 업무수행을 하였던 변호사와 회계사, 금융감독당국에서 수많은 기업회계사건을 처리한 실무경험을 지닌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다수의 회계감리사건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김현진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246	E-Mail. hjikim@shinkim.com
황도윤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472	E-Mail. dyhwang@shinkim.com